

## 법과대학 졸업능력인증에 관한 내규

### 제1조(목적)

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생이 졸업하는 데 갖추어야 할 영어 등 외국어능력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- ① 본 내규는 법과대학에 2003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1항은 법과대학에 2003학년도에 일반편입, 학사편입, 재입학 등의 사유로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.

제3조(기준)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.

1. 공인 영어능력 시험 TOEIC 700, TOEFL(CBT) 197(PBT 529), TEPS 625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졸업예정 2학기 전까지 제출한 자
2. 중국어 HSK 6급,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졸업예정 2학기 전까지 제출한 자
3. 독일어 중급시험(ZMP) 4등급,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졸업예정 2학기 전까지 제출한 자
4.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(행정고시, 외무고시, 입법고시, 지방고시 등)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
5. 7급 공무원시험(법원·검찰행정직) 또는 각종 자격시험(법무사, 세무사, 공인감정사, 변리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손해사정인, 금융자산관리사 등)에 합격한 자
6. 해외 대학에서 3학점 이상 취득한 자
7. 졸업예정 전 2학기 기간 중에 교양영역 영어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B+ 이상인 자
8. 법과대학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그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### 제4조(졸업사정위원회)

- ① 졸업사정위원회의 의장은 학장이 되며, 법과대학전공지도교수회가 졸업사정위원회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한다.
- ② 졸업사정위원회는 제3조의 기준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학교 게시판,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이의 신청)

- ① 법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졸업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을 회의에 출석시키거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능력 또는 자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6조(기준미달자)

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정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을 유예하고 소정 과정만 수료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7조(보칙)

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.

## 부칙

### 제1조(시행일)

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 (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)

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수료한 자는 2003년에 시행되는 종전의 C.R.S.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취업하여 3월 이상 재직 중인 자는 제3조 제8호에 의하여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
### 제3조 (재학생등에 대한 경과조치)

①2003년 3월 1일 현재 법과대학에 재학 하거나 휴학 중인 자에 대하여도 본 내규를 준용하되, 종전의 C.R.S. 인증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한다.

②본 내규는 종전의 C.R.S. 제도가 시행될 당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가급적 당해 학생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·적용하며, 종전의 C.R.S. 제도에 의하여 이미 인증을 받은 자는 본 내규에 의하여 다시 능력 또는 자격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.